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법률 제4826호) 4조 1항에 의하면 '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'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'산재보험법판례속보'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.

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

판결요지

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(통지·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때)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.

판결이유

-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, 그의 남편인 소외 망 김○○가 1995. 5. 8.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 9. 13.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,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-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, 1996. 11. 1. 선고, 95구 26928 판결
- 판시사항 :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
- 참조조문 :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4. 12. 22.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. 5. 1부터 시행된 것) 제89조, 제90조, 제94조 제2항
- 참조판례 :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, 95누11535 판결
- 주 문 :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2. 가. 살피건대,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.

(1)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○○는 1995. 5. 5. 소외 ○○건설주식회사에 콘크리트공으로 고용되어 석문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 현장에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을 하였는데, 같은 달 8일 위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망하였고, 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추정되었다.

(2) 원고는 1995. 8. 29.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, 피고는 같은 해 9. 13.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(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(3) 원고는 1995. 9. 20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, 같은 달 22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.

(4) 피고는 1995. 10. 18.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 정본을 서울 영등포우체국 접수번호 189461호 보통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로 송부하였다.

(5) 원고는 위 심사청구를 하였을 당시부터 위 아파트 ○동 ○호에 자부인 소외 강

○○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, 1995. 10. 23. 서울 노원우체국 소속집배원인 소외 문○○이 위 결정서 정본을 위 아파트 ○동 경비원인 소외 이○○에게 교부하였다.

(6) 원고는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996. 3. 2.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, 그 재심사 도중인 같은 해 4. 11. 위 어○○이 위 아파트 ○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○동 거주자들에게 송부되는 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거주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거주자가 4내지 5일 동안 출타 중이면 그 우편물을 즉시 반송시키고 있는데, 원고에게 송부된 위 결정서 정본 역시 이를 교부받은 1995. 10. 23.부터 3일 이내에는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고, 또한 원고의 자부에게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5일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가 위 어○○ 명의로 작성되어 이 확인서가 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.

(7) 위 심사위원회는 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1996. 4. 29.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.

(8) 그러므로 보건대,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4. 12. 22.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. 5. 1.부터 시행된 것) 제89조와 제90조는,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,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

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
(통지·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
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
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
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
추정할 수 있는 때)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
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
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.

한다고 규정하였고, 위 법 제94조 제2항은, 위와 같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 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였다.

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인 바, 이와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‘안 날’이라고 함은 원고가 통지·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,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원고가

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, 95누11535 판결 참고).

따라서,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1996. 3. 2.에 한 것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소 역시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■■■